
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전현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26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1. 3.

발 의 자 : 전현희 · 임종성 · 이원욱
황 희 · 안규백 · 주승용
기동민 · 박홍근 · 이찬열
김상희 · 박용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분양업자가 분양 광고를 통해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고 있으나,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 안전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진 설계·공법 등 건축물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이 누락되어 있음.

이에 분양업자가 실시하는 분양 광고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·공법 등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,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(안 제6조제2항).
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위치·용도·규모 등”을 “위치·용도·규모 및 내진설계·공법 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분양 광고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 광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분양방법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의 <u>위치·용도·규모</u>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6조(분양방법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위치·용도·규모</u> 및 <u>내진설계·공법</u> 등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